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건설부령 제391호 (1985. 12. 23)

제 1 조 (목 적) 이 규칙은 임대주택 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입주자 선정방법) 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제 3 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건설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에 대한 상각비, 수선유지비, 일반관리비, 화재보험료,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용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대손충당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4 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① 공공임대주택외의 임대주택(이하 “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각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민주택기금에서 용자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민주택기금의 용자를 받아 건설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당해 임대주택의 가격에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용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가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제 5 조 (임대료의 납부등) ① 임대료는 월단위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기간이 월의 초일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 또는 종료되는 월의 임대료는 일단위로 산정한다.

② 임대료의 납부기한은 매월 말일(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다만, 월의 15일 이후에 임대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월의 말일을, 월의 말일전에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③ 임대인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7 일전까지 임대료 납부고지서를 임차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월의 임대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조 (연체료)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제 5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안에서 임대계약으로 정한 연체효율에 따라 산출된 연체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 7 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증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증감에 관하여는 제 3 조 및 제 4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 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8 조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 9 조 (임대계약의 해지등) 임차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당해 임대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법 제 11 조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매매·중여 기타 권리의 변동)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매한 경우
3. 임대기간이 시작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료를 3월이상 연체한 경우

5.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6.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제 10 조 (임대주택의 분양) ①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 1 호 서식의 분양계획서를 관할 시장(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인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당시의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당시의 임차인이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양하여야 한다.

제 11 조 (분양제한기간내의 분양사유) 영 제 6 조 제 2 항 전단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를 말한다.

제 12 조 (임대조건 신고) ① 법 제 12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개시일 10일전까지 별지 제 2 호 서식의 임대조건 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대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군수가 임대조건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 3 호 서식의 임대조건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 2 호 서식의 임대조건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임대주택제도를 정착시키고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임대주택건설촉진법(1984. 12. 31, 법률 제3,783호) 및 동법시행령(1985. 8. 29, 대통령령 제 11,752호)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기존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도록 함. (영 제 2 조).

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

하여는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고,

○ 그 외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1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임대보증금은 당해 주택가격에서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하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영 제 3 조 및 제 4 조).

다. 임대료의 납부기한은 매월 말일로 하고, 임차인이 납부기한까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안에서 임

대계약으로 정한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납부하도록 함(영 제 5 조 및 제 6 조).

라. 임대기간은 1년이상으로 하되, 임대기간내라도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거나 임대료를 3월이상 체납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영 제 8 조 및 제 9 조).

마. 분양제한기간이 경과한 후 임대주택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분양 당시의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도록 함(영 제 10 조).

(별지생략)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협조

당부에서는 범국가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에너지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별첨과 같이 건축물의 준공 검사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보일러설치 시공확인서를 제출토록 하여 이의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각 시·도에 지시하였는 바, 건축사법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가 검사조서를 작성하거나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의 확인에 만전을 기하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 개 정

구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 검 자		형식승인 및 자재 사용여부	판 정		비 고
			시공업자	준공조사자		양	불량	
절연저항측정	회로	()MΩ	()MΩ					
		접지시공 여부	소요 () 시공 ()	소요 () 시공 ()				
접지저항측정	접지저항치	()	()					
		인입구배선 옥내배선	()% ()회로 ()%	()% ()회로 ()%				
○콘센트	100V급 ()개소	100V급 ()개소	100V급 ()개소					
		220V급 ()개소	220V급 ()개소					
○강압기 설치	종합강압기 개별강압기	종합강압기 개별강압기	종합강압기 개별강압기					
		○전등	()회로 ()% 공급전압 (100V, 220V)	()회로 ()% 공급전압 (100V, 200V)				
비닐코오드 선 사용	적정 사용 부적정 사용	적정 사용 부적정 사용	적정 사용 부적정 사용					
		인입구배선 시공 여부	시공, 미시공	시공, 미시공				

● 현 행

구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 검 자		형식승인 및 자재 사용여부	판 정		비 고
			시공업자	준공조사자		양	불량	
절연저항측정	회로	()MΩ	()MΩ					
		접지시공 여부	소요 () 시공 ()	소요 () 시공 ()				
접지저항측정	접지저항치	()	()					
		인입구배선 옥내배선	()% ()회로 ()%	()% ()회로 ()%				
○콘센트	전 등	콘센트 적정 사용	콘센트 적정 사용					
		비닐코오드 선 사용	부적정 사용	부적정 사용				
인입구배선 시공 여부	시공·미시공	시공·미시공	시공·미시공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중개정(안)

건설부공고 제114호(1985. 12. 13)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법령안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5년 12월 13일

건설부장관

1. 법령제명 :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중 개정안

2.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취지

가. 여객자동차정류장 부지의 토지이용도 제고와 승객이용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여객자동차 정류장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복합건축물로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6조 제3항).

나. 도심지 옥내형 변전소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폐열활용으로 인한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변전설비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3항).

다.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각종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시 심신장애자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토록 함(제6조의2).

라. 관광사업 지원을 위하여 자동차정

류장법상 여객자동차정류장중 전세버스정류장을 자동차 정류장 시설의 종류에 포함하여 도시계획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마. 시·중점인접지역인 경우에 한하여 주거지역 및 자연녹지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시내버스정류장 설치기준을 시·중점인접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바. 유원지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추진을 위하여 유원지내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면적의 기준을 유원지 규모에 따라 확대함(제47조).

사. 유원지내 유원지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기존의 종교용 시설을 추가하여 사찰 등 기존의 종교용 시설에 대한 증·개축 및 수선을 할 수 있도록 함(제48조).

아. 가스공급설비는 사실상 공장시설과 유사하므로 전용공업지역내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71조).

자. 유아교육진흥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서 학교의 범위내 유아원을 포함하여 도시계획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치기준을 정함(제84조, 제86조).

차. 기존학교시설 확충사업 지원을 위하여 본 규칙 제정 이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학교의 교지를 추가 확장하는 경우에는 교육법 등에서 정하는 교지기준면적이하로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제85조, 부칙 제3항).

카. 도시계획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하수도의 범위를 한정함(제113조).

타. 쓰레기 종말처리시설중 소각, 재분류방법의 시설은 공장과 유사하므로 폐열이용 및 공해방지 측면을 고려하여 녹지지역외에 공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127조).

3. 의견제출 : 이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86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를 건설부장관(참조 도시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주소

고 시

오물청소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고시

환경청고시 제85-13호(1985. 12. 12)

오물청소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청 및 시·도에 등록된 종말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자 및 분뇨정화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5년 12월 12일

환경청장

1. 분뇨종말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자, 쓰레기종말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자, 오

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자 및 분뇨정화조의 설계·시공업자 준수사항

가. 등록에 관한 사항

(1) 등록요건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중에는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등록요건(기술인력, 건설업면허, 상호, 대표자, 자본금 또는 재산평가액, 사무소 및 실험실 소재지)에 변경이 있

을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법에 의한 자격요건의 변경이 동시에 발생하였을 때에는 동 신고기간을 50일 이내로 한다.

(3)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4) 휴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설계, 시공,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도급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도급받은 공사는 부실공사 등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 설계·시공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에 대하여 준공후 사용 개시일로부터 3개월 간격으로 1년간 환경청에서 정하여 고시한 환경오염 공정시험법 등에 따라 성능검사 및 기능 점검을 실시하고 시험일지등 관계자료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분뇨정화조 설치공사는 처리대상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4) 분뇨정화조 설계·시공업자는 불법 또는 불량 분뇨정화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

(1) 매년 설계·시공에 대한 실적을 별표 1에 의거 익년 2월 말일까지 등록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기타사항

(1) 영업에 관련된 제반서류를 등록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보존하여야 한다.

(2) 등록관청의 지도·감독 및 현지확인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등록관청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등록된 영업소 입구에는 별표 3에 따라 등록업체라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분뇨정화조 제조업자 준수사항

가. 등록에 관한 사항

(1) 등록요건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중에는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등록요건(기술인력, 상호, 대표자, 자본금 또는 재산평가액, 사무소 및 공장소재지)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영업을 종류 및 개요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변경등록한 후 시제품을 제조하여 국가공인시험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5) 휴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정화조 제조에 관한 사항

(1) 환경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뇨정화조 재질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2) 제품의 구조 또는 용량은 등록된 도면과 동일하게 제조하여야 한다.

(3) 오물청소법에 의한 성능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하여야 한다.

(4) 등록하지 아니한 품목의 제품은 제조할 수 없다.

(5) 등록된 공장소재지 이외의 장소에

서 제품을 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6) 제품에는 환경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7) 작업표준 및 품질검사규정을 정하여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

(8) 실험실 및 품질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제품에 대한 자체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관계서류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

(1) 매년 제조판매한 실적을 별표 2에 의거 익년 2월말일까지 등록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기타사항

(1) 영업에 관련된 제반서류를 등록된 영업소 또는 공장소재지에 보존하여야 한다.

(2) 감독 관청의 지도·감독 및 현지 확인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감독 관청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등록된 공장입구에는 별표 3에 따라 분뇨정화조 제조공장이라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분뇨정화조 제조업자의 정화조 제조에 관한 사항중 제 7 항 및 제 8 항에 대하여는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령안입법예고

전기설비기술기준령개정(안)

동력자원부공고 제85-45호 (1985. 12. 20)

전기설비기술기준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법령안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5년 12월 20일

동력자원부장관

1. 법령제명 : 전기설비기술기준령개정(안)

2. 개정취지

전기기술의 진보와 더불어 새로운 전기기기 개발과 신공법의 보급에 따른 제반변동 사항을 현실화하고 시설의 안전 확보 및 타법령과의 상이점을 보완하여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효율적인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시설물 취급자 안전을 위하여 발·변전소 등에 시설하는 고압 및 특별고압용 기계기구의 노출된 충전부분에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기준을 강화하였음(제 37조).

○접지공사 시공시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연성이 있는 콤파운드트드트케이블은 제외

토록 현실화하였음(제20조).

○과전류로 인한 기기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과부하 보호장치와 단락보호 전용 퓨어즈를 조합한 시설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였음(제39조).

○전선로에서 작업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용 예비전원의 역송방지시설을 의무화 하도록 하였음(제72조).

○전선의 이상온도를 사전에 검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전선이 상온도 검지장치 시설기준을 추가하였음(제44조).

○대형건물의 저압 옥내배선 닥트 공사방법에 신공법인 셀물라 닥트시설방법

을 추가하였음(제200조).

○홍행장에 시설하는 저압 전기공작물에 대한 안전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단면적 2mm²이상의 600볼트 고무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무대용의 콘센트박스, 닥트의 금속제 외함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도록 추가하였음(제211조).

○전기시설 취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옥내에 시설하는 전선의 최저 높이와 전선과 건조물과의 이격거리 및 사용전압별 시설기준을 강화하였음(제214조).

○파이프 라인등에 발열선을 시설하는 경우 가열장치별 시설기준을 추가하였음

(제245조).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와 철대및 금속제 외함 접지방법중 외함이 없는 기계기구에 대한 접지시공방법과 누전차단기의 동작시간을 단축하였음(제34조).

4. 의견제출 :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개인은 1986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력자원부장관(720-23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소

법령안입법예고

도시공원법시행규칙(안)

건설부공고 제103호(1985. 11. 22)

도시공원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법령안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5년 11월 22일

건설부장관

1. 법령제명 : 도시공원법시행규칙(안)

2. 지정의 주요내용 및 그 취지

3. 의견제출

이 도시공원법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85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부장관(참조 : 도시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건설부 도시국 녹지공원과(500-286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현 행	개 정 안	취 지
○공원시설추가 (규칙제2조) • 조경시설 • 유희시설 • 운동시설 • 교양시설 • 편익시설	○관상용식수대 및 잔디밭 산울타리, 그늘시렁, 못, 폭포등롱, 정석, 징검다리 ○시소, 정글짐, 사다리 수평순환회전차, 경사순환회전차, 수직순환회전차, 모노레일, 삭도, 도섭지, 주유지, 낚시터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육상경기장, 사격장, 스케이트장, 조정장, 칠봉, 평행봉 ○도서관, 온실, 야외극장, 전시관, 문화회관, 청소년회관, 천체 또는 기상관측시설, 기념비와 고분, 성적, 고옥, 기타유적등 ○우체통, 공중전화통화실, 대중음식점, 약국, 유우드호텔, 수화물예치소, 전망대, 시계탑, 음수장, 수세장	좌 동 ○수평, 경사, 수직순환회전차→순환회전차로 통합 씨름장, 레슬링장, 탁구장, 유도장, 태권도장, 롤러스케이트장 추가 좌 동 좌 동	민자유치 촉진

항 목	현	행	개 정 안	취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시설 ○공원시설건폐율 확대(규칙제5조) • 어린이공원 • 근린공원 • 도시자연공원 • 묘지공원 ○공원입장료징수 조건완화(규칙제7조) • 조문정리(규칙제2조5조제4조) • 설치구역완화(규칙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고, 차고, 게시판, 표지, 조명시설, 쓰레기처리장, 쓰레기통, 수도, 정호, 암거, 수문, 호안, 옹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고, 차고, 게시판, 표지, 조명시설, 쓰레기처리장, 쓰레기통, 수도, 정호, 암거, 수문, 호안, 옹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안, 옹벽, 수문, 암거는 삭제 5/100이하 3 만㎡ 미만 20/100이하 3 만㎡ 이상 10만㎡ 미만 15/100이하 10만㎡ 이상 10/100이하 30만㎡ 미만 10/100이하 30만㎡ 이상 50만㎡ 미만 8/100이하 50만㎡ 이상 4/100이하 2/100이하 ○건설부령이 정하는 별표1의 시설중 유희 시설 5개, 운동시설 또는 교양시설중 2종목 ○일목요연하게 도표화 하였음. ○전망대를 본조항에서 삭제함으로서 공원 구역내에 어디든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자유치 촉진 국민편의 도모

건설부공고 제109호(1985. 12. 2)

건설관계교육전문기관지정
 건설업법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관계교육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 공고합니다.

1985년 12월 2일
 건설부장관

1. 건설관계교육전문기관
 가. 소재지: 인천직할시 남구 만수동 377
 나. 명 칭: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2. 위탁업무내용
 가. 건설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보수교육
 나. 건설업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자 연수교육

3. 경과조치
 이 공고가 있기 전에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이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실시한

보수교육 및 경영자 연수교육은 이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 노동부고시 제85-45호

건설공사에 있어서 임금산출방법에 관한 고시

1. 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23조제1항에 의한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개선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으로 한다.

다만,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임금기초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산정된 임금액이 도급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90%를 임금으로 산정할 것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1조의 2제2호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본 고시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건설공사 총공사금액의 28%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총공사금액의 30%
 일반건설공사 총공사금액의 27%
 기계장치공사 총공사금액의 19%

3. 노동부고시 제84-32호(84.12.8)
 는 1986년 1월 1일부터 폐기한다.
 1985년 12월 21일
 노동부장관